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4910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분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정◯◯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구단433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21.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3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제2항 본문"이라는 문언에 "제2항 단서 전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이 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제2항 본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 주장처럼 여기에 "제2항 단서 전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이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3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 해석상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법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1]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제2항 본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 주장의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제2항 본문"이라는 문언에 "제2항 단서 전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해석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다.

조세 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을 체계적으로 보더라도, 구 지방세

1) 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목적에 합치하는 해석이나 납세의무자 보호 목적에 합치하는 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 해석상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합목적적 해석을 의미한다(재정 목적, 보호 목적과 같이 단일의 목적이 아니라 헌법 가치와 질서들, 인권과 기본권들,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원칙들이 모두 반영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해석을 의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3

법 제13조 제3항에는 "제2항 본문" 외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본문"이라는 문언에 "제2항 단서 전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단일의 원칙과 예외가 아니라 유형별 원칙과 예외, 예외의 예외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효과가 "제2항 단서 전단" 기재 세율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도 피고 주장과 같은 "제2항 단서 전단"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세율인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명시하고 있다][2].

나아가 입법자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을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하면서 아무런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입법자가 아닌 법원이 피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입법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3]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창설하는 수준의 해석을 통해 납세자에게 그 입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22. 11. 3.자 2022두49007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6. 22. 선고 202

2) 지방세법 각 조문들 체계상 과세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세율이 하나이거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3)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조세정책적으로 중과세할 수 있으나, 법인이 개인들에게 주택을 조기에 매각하는 방향으로의 조세정책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입법 오류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입법 당시 자료 등도 부족하다(개정 전 문언과 체계만을 놓고 본다면,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달리 취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13

1누10145 판결 취지 등 참조]. 그 밖에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판사 김○○

판사 최○○